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7.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1년 이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훈련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시설”로 한다.

제2조(「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u>1년 이내</u> 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4. <u>교육훈련시설</u> 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생략)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u> ----- ----- 3. (현행과 같음) 4. <u>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시설</u> ----- ② (현행과 같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희귀질환전문기관</u> 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u>정당한 사유 없이 희귀질환 전문기관</u>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